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68
------------	------

2013년 7월 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13년 7월 3일 상정·심사보류)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3년 7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가. 제안이유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라 승용차 이용억제 효과가 인정될 경우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프로그램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효과가 미미한 프로그램 일부를 폐지하고, “시차출근제”는 “유연근무제”로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하여 그 이행 기준에 종사자의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
- 승용차부제 중 그 성격 및 이행방법이 유사한 “승용차 10부제·5부제·요일제”를 “승용차 요일제·5부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과 별도 운영되던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자전거 이용”으로 통·폐합함(안 제6조제3항, 제8조부터 제10조)
- 감축프로그램 중 그 효과가 비교적 큰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의 경감비율을 각각 15%에서 30%, 20%에서 25%,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함(안 별표 1)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서식 일부를 변경함(안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2) 조직담당관(위원회 설치) : 해당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 동의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담) : 갈등 없음

라. 입법예고

- 기 간 : 2013. 4.11 ~ 2013. 5. 1
- 제출의견 : 3건(반영 1건, 미반영 2건)
 - 반 영 : 유연근무제 경감비율 15% ⇒ 30%(구로구청)
 - 미반영 : 감축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DB 구축과 다양한 감축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병원협회),
자전거이용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만 가능(마포구청)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영배)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라 승용차 이용억제 효과가 인정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프로그램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등 3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승용차 부제 등 10개 프로그램을 3개로 통폐합하며, 통근버스 운영 등 3개 프로그램의 경감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참고사항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프로그램	경감비율	프로그램	경감비율
폐지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20%	-	-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종사자)	10%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이용자)	30%		
통폐합	10부제	10%	5부제	20%
	5부제	20%		
	자전거 보관소 설치	20%	자전거 이용	20%
	자전거 이용	10%		
	승용차 함께 타기	5%	기타	30%
	대중교통의 날	5%		
	배송시스템 개선	10%		
	시설물 주변 교통환경 개선	10%		
	연합 교통수요 관리	5%		
	기타	30%		
경감률 상향	통근버스 운영	20%	통근버스 운영	25%
	셔틀버스 운영	10%	셔틀버스 운영	15%
	시차출근제	15%	유연근무제(시차출근제, 스마트워크센터, 재택근무 등)	30%

첫째,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의견

-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중사자 승용차 이용제한’과 ‘중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고 있음

‘중사자 승용차 이용제한’의 경우 대부분의 대형시설물은 일부 관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사자가 승용차 출·퇴근이 어려운 실정이고, 대형판매시설은 이용고객의 유인을 위한 목적으로 중사자의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의 경우 중사자 보조금 지급 참여율은 1.4%에 불과하고 이용자 보조금 지급은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에서 사은품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등 프로그램 취지에 맞지 않거나 그 효과가 미흡하여 폐지하는 것임

둘째, 프로그램 통폐합에 대한 의견

-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포함한 10개의 프로그램을 3개로 통폐합하고 있음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의 성격이 유사한 승용차 ‘10부제’와 ‘5부제’는 ‘5부제’로,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보관소 설치’는 ‘자전거 이용’으로 통폐합하고, 교통량 감축효과가 제한적인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 주변 교통환경 개선’, ‘연합체 교통수요관리’는 ‘기타’항목으로 통폐합하는 것임

셋째, 프로그램 경감률 상향에 대한 의견

-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통근버스 운영’ 등 3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있음

승용차 이용 억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통근버스 운영’과 ‘셔

틀버스 운영'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각각 5%p 상향조정¹⁾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교통량에 대한 분산 유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차출근제를 재택근무·스마트워크센터 제도 등을 포함하여 '유연근무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감비율을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할 것임

다만, 시차출근제·재택근무·스마트워크센터 등 유연근무제의 경우 업종 및 업태에 따라 적용이 제한되거나 유연근무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실태조사와 명확한 경감기준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현재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설물에 변동이 없다고 전제하여 일부 프로그램의 폐지 및 경감률 상향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변동을 살펴보면, 3개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경감 혜택 취소로 인해 24억 61백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증액되고, 3개 프로그램 경감률 상향 조정으로 인해 5억 36백만원이 추가로 경감되어 총 19억 25백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증액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프로그램 폐지 및 경감률 상향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변동(추정)

구 분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수 (개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변동(백만원)		
			현재 (A)	개정 후 (B)	변동액 (B)-(A)
폐 지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131	△1,634	-	1,634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종사자)	-	-	-	-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이용자)	29	△827	-	827
	소 계(1)	160	△2,461	-	2,461
경감률 상 향	통근버스 운영(20%⇒25%)	131	△985	△1,231	△246
	셔틀버스 운영(10%⇒15%)	116	△494	△741	△247
	유연근무제(15%⇒30%)	19	△43	△86	△43
	소 계(2)	266	△1,522	△2,058	△536
합 계(소계(1)+소계(2))		426	△3,983	△2,058	1,925

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상향 조정 : 통근버스 운행 20% ⇒ 25%, 셔틀버스 운행 10% ⇒ 15%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은 실제 교통량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자칫 교통량 감축 효과는 없으면서 교통유발부담금만 경감해주는 잘못을 범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신설·폐지·통폐합·경감률 조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들에 대한 반발을 고려할 때, 시설물 용도별로 실제 교통량 감축 효과가 정량적으로 입증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감비율을 높여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교통량을 감축하는 대상시설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실제 교통량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이행여부도 특정 일자에 국한하여 점검하기 때문에 교통량 감축은 없으면서 교통유발부담금만 경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감률 상향 조정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답변 : 시설물 특성·입지, 주변 교통환경, 이용자 행태 등에 따라 같은 용도·규모의 시설물이라도 교통유발 정도가 다르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더라도 교통량 감축 효과가 달라 각 개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교통량 감축 효과를 정량화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신설·폐지·통폐합·경감률 조정 등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 질의 :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프로그램이라도 이행기준이 적정하지 않으면 참여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물에만 혜택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적정 이행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답변 : 프로그램 이행기준의 용이성 정도에 따라 참여율의 변화가 크고 참여 정도에 따라 경감액도 달라지며, 시설물별·용도별로 체감하는 이행기준의 부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행기준 마련시 신중을 기하고 있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과 감면율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일부 감면율의 조정을 통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증진시키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유연근무제의 이행기준을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서 “종사자의 30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함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유연근무제와 기타의 최대경감비율을 각각 “부담금의 100분의 30범위내”에서 “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로 조정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68
----------	---------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 5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과 감면율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일부 감면율의 조정을 통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 골자

- 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유연근무제의 이행기준을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서 “종사자의 30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2조제4호)
- 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유연근무제와 기타의 최대경감비율을 각각 “부담금의 100분의 30범위내”에서 “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로 조정함(별표 1)

3. 참고 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 라목 중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을 “종사자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안 별표 1의 유연근무제의 이행기준란 중 “종사자의 50%이상”을 “종사자의 30%이상”으로 하고, “(3시간 이내만 인정)”을 삭제하며, 최대경감비율란의 “부담금의 100분의 30범위내”를 “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로 한다.

안 별표 1의 기타의 최대경감비율란의 “부담금의 100분의 30범위내”를 “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로 한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유연근무제의 최대경감란 중 “30”을 “20”으로 하고, 기타란의 최대경감란 중 “30”을 “20”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p> <p>가. 승용차 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u>부설주차장으로 당해</u>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p> <p>나. <u>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u> : <u>종사자 승용차의 시설물 대지 및 부설주차장 운행을 제한하는 것</u></p> <p>다. 주차수요관리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뜻</u>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p> <p>가. ----- : ----- ----- ----- <u>부설주</u> <u>차장을 이용하는</u> ----- -----</p> <p>나.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뜻</u>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4. ----- ----- -----.</p> <p>가. ~ <u>다.</u>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 주차면수 축소, 주차유도시스템 도입 등으로 주차수요 발생을 억제하여 주차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p>	<p>----- ----- ----- ----- -----</p>	
<p><u>라.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u> <삭제> : 종사자와 이용자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 충전 또는 지하철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것</p>	<p><삭제></p>	
<p><u>마. 자전거 이용 활성화</u> :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p>	<p><u>다. 자전거 이용</u> : ----- ----- ----- -----</p>	
<p><u>바. 승용차함께타기</u> :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p>	<p><삭제></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p> <p><u>사.</u> 시차출근제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함.</p> <p><u>아.</u> 통근버스 운영 :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p> <p><u>자.</u> 셔틀버스 운영 : 시설물을 이용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p>	<p><u>라.</u> 유연근무제 :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시차출근(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재택근무 등에 참여하여 통행발생을 분산, 또는 억제하려는 것.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유연근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p> <p><u>마.</u> ----- ----- ----- -----</p> <p><u>바.</u> ----- -----</p>	<p><u>라.</u> 유연근무제 : 종사자의 30퍼센트 이상이 시차출근(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재택근무 등에 참여하여 통행발생을 분산, 또는 억제하려는 것.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유연근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p> <p><u>마.</u> ~ <u>사.</u>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조(부담금의 면제) ① 영 제17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한다.</p> <p>1. ~ 4. (생략)</p> <p>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시설로서 제12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이하 "경감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면제여부를 결정한다.</p> <p>1. ~ 2. (생략)</p>	<p>제3조(부담금의 면제)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 ----- -----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3조(부담금의 면제)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생략)</p> <p>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u>별표 3</u>과 같다.</p> <p>③ (생략)</p>	<p>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별표 2</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때에는 각각의 감축프로그램 경감 비율을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승용차 부제 운영(10부제, 5부제, 2부제, 요일제) 다만,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부제 운영이 다른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각각 50퍼센트 적용하여 합산한다.</p> <p>2. 종사자 승용차 부제 운영과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p> <p>3.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과 종사자 대중교통의 날 운영</p> <p>4.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과 종사자 승용차함께타기</p> <p>5. 통근버스 운영과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 중 통근버스 공동운영</p>	<p>부제 운영이 다른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50퍼센트 적용하여 합산한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6. 승용차함께타기와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중 승용차함께타 기 ④ (생략)</p> <p>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생략)</p> <p>② 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부담금 을 경감받고자 하는 때에는 8월 1 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교통량감축기간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다만, 자전거보관소 설치, 주차유도시스 템 등 1회성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p>	<p><삭제></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 ----- -----.</p> <p>③ ----- ----- -----, 주차유도시스템과 같이 ----- ----- -----.</p> <p>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p>	<p>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탄력성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p> <p>1. 승용차 10부제·요일제(5부제 포함) 및 2부제</p> <p>가. 승용차10부제 : 주차면수의 2퍼센트 이내</p> <p>나. 승용차 요일제 :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p> <p>다. 승용차2부제 :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p> <p>2. 승용차함께타기 :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p> <p>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p>	<p>탄력성 등) -----</p> <p>-----</p> <p>-----</p> <p>-----</p> <p>-----</p> <p>-----</p> <p>1. 승용차 요일제·5부제 및 2부제</p> <p>〈삭제〉</p> <p>가. 승용차 요일제·5부제 :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p> <p>나. 승용차2부제 :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p> <p>〈삭제〉</p> <p>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p>	<p>탄력성 등)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4.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수의 5 퍼센트 이내</p> <p>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4. (생략)</p> <p>5. 31일과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7시 사이의 <u>10부제·5부제·요일제</u> 및 2부제</p> <p>6. ~ 7. (생략)</p> <p>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 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p>	<p>3.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수의 5 퍼센트 이내</p> <p>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5부제</u> ----- -----</p> <p>6. ~ 7. (현행과 같음)</p> <p>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12조에 따른 경감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p>	<p>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	-------	-------

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 경감비율									
승용차부제	10부제 중사자 이용자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 인정	○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요일제	(생략) ○(생략)	○(생략)									
	5부제	(생략) ○(생략)	○(생략)									
	2부제	(생략) ○(생략)	○(생략)									
중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중사자 (100인 이상)	○출퇴근시 등에 소속 중사자(차량소지자)에 대한 자가용 이용을 강제로 제한(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등)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중사자비율</td> <td>≥80%</td> <td>≥90%</td> </tr> <tr> <td>업무시설 등 (별표3 구분 5,11,12,14,15)</td> <td>10%</td> <td>20%</td> </tr> <tr> <td>판매시설 등 (별표3 구분 ~4,6-10,13,17)</td> <td>5%</td> <td>10%</td> </tr> </table> - 중사자비율 = $\frac{\text{이용제한 참여중사자}}{\text{총중사원수(차량소지자)}}$	중사자비율	≥80%	≥90%	업무시설 등 (별표3 구분 5,11,12,14,15)	10%	20%	판매시설 등 (별표3 구분 ~4,6-10,13,17)	5%	10%	○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중사자비율	≥80%	≥90%										
업무시설 등 (별표3 구분 5,11,12,14,15)	10%	20%										
판매시설 등 (별표3 구분 ~4,6-10,13,17)	5%	10%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 경감비율
승용차부제	<삭제>	<삭제>	<삭제>
	요일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부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부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 경감비율
승용차부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요일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5부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2부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주차수요관리	주차장유료화	(생략)	○(생략)	○(생략)	주차장유료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차장유료화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주차장축	(생략)	○(생략)	○(생략)	주차장축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차장축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주차도시스템	(생략)	○(생략)	○(생략)	주차도시스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차도시스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	중사자(100인 이상)	○중사자 80%이상에게 매월 월40회이상 탑승가능 비용을 교통카드 또는 지하철 승차권 등으로 제공(현금지급 제외) - 중사자지급률 = 보조금 지급중사자 / 총중사자	○경감산정 : 실제 지급금액 전액(부담금의 10%범위내, 월단위)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이용자	○시설물 이용자에게 교통카드 충전, 지하철 승차권 등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현금지급 제외)	○경감산정 : 실제 지급금액 전액(부담금의 30%범위내, 월단위)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자전거이용활성화	자전거보관소설치등	중사자이용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시설물내 자전거 보관소, 도난방지시설, 수리공구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보관소 최소 10대이상 설치) ○자전거 구입 : 중사원 5%이상(중사원 100인이하 최소 5명) 참여 및 구입대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확보(대당 5만원 경감) ○경감산정 : 설치비용 전액(부담금 20% 범위내) ※자전거구입비용, 자전거보관소 설치비용 등은 해당 연도만 경감 <자전거 보관소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물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후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경감산정 : 운영비용 전액(부담금 10% 범위내, 설치비 지급 연도는 제외)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자전거이용	(생략)	○(생략)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자전거이용	(현행과 같음)
승용차합께타기	중사자	○출퇴근시 중사자의 승용차에 2명이상 승차하여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최하 20대 이상) 참여차량표지, 참여자 등 관계계획 비치, 주차장 구분운영 ○경감산정 : 참여차량 수 20대이상 - 20대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1 - 20대초과시마다 100분의1씩 추가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내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시차출근제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이상 출근시간 조정(종사자 100인이상) ※ (생략) ○ 경감산정 : 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5 (3시간 이내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의 100분의 15범위내 	유연근무제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50%이상 시차출근(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참여, 스마트센타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현행과 같음) ○ 경감산정 : 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10 (3시간 이내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의 100분의 30범위내 	유연근무제	(개정안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30%이상 시차출근(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참여, 스마트센타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개정안과 같음) ○ 경감산정 : 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 																									
통근버스영	(생략)	○(생략)	○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	통근버스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담금의 100분의 25범위내	통근버스영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서운틀버스영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 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5%) - 일평균 총운행횟수 = [노선1(대수×회수) + 노선2(대수×회수) -] <table border="1"> <tr> <td>일평균 총운행 횟수</td> <td>≥10회</td> <td>≥10회</td> <td>≥60회</td> <td>≥80회</td> <td>≥100회</td> </tr> <tr> <td>경감률</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able>	일평균 총운행 횟수	≥10회	≥10회	≥60회	≥80회	≥100회	경감률	1%	2%	3%	4%	5%	○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내	서운틀버스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10%) -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r> <td>일평균 총운행 횟수</td> <td>≥10회</td> <td>≥20회</td> <td>≥30회</td> <td>≥40회</td> <td>≥50회</td> </tr> <tr> <td>경감률</td> <td>2%</td> <td>4%</td> <td>6%</td> <td>8%</td> <td>10%</td> </tr> </table>	일평균 총운행 횟수	≥10회	≥20회	≥30회	≥40회	≥50회	경감률	2%	4%	6%	8%	10%	○부담금의 100분의 15범위내	서운틀버스영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일평균 총운행 횟수	≥10회	≥10회	≥60회	≥80회	≥100회																															
경감률	1%	2%	3%	4%	5%																															
일평균 총운행 횟수	≥10회	≥20회	≥30회	≥40회	≥50회																															
경감률	2%	4%	6%	8%	10%																															
업무택시제	(생략)	○(생략)	○(생략)	업무택시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업무택시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대중교통의날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에서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고 출퇴근시 소속종사자 90% 이상 참여하는 경우 <table border="1"> <tr> <td>대중교통의날</td> <td>1회</td> <td>2-3회</td> <td>4회이상</td> </tr> <tr> <td>경감률</td> <td>2%</td> <td>3%</td> <td>5%</td> </tr> </table>	대중교통의날	1회	2-3회	4회이상	경감률	2%	3%	5%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내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대중교통의날	1회	2-3회	4회이상																																	
경감률	2%	3%	5%																																	
배송시스템개선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이 승용차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배송에 어려움이 없는 배송시스템 구축 ※ 개선활동 해당 연도에 한하여 경감 	○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내 - 경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시설물주변 교통환경개선	이용자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주변 및 내부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혼잡 완화 ○ 시설물 주변 주정차 차량(택시, 버스 등)을 위한 대기공간 확보 등 ※ 개선활동 해당 연도에 한하여 경감 	○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내 - 경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기타	(생략)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생략)	기타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함께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 시스템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개선 등) 	○부담금의 100분의 30범위내 - 경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기타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 - 경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	-------	-------

[별표 2]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제6조제2항 관련)**

□ 승용차 함께 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해당 기업체	참여한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60인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인 이상 7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70인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5%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 시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 시 : 5%

<삭제>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	-------	-------

[별표 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1.~17. (생략)

비 고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의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별표 3**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 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축총면적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담 당 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정여부	세부사항	
	계				
	승용차 부 제	10 부 제	10	시행방법 :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1.~17. (현행과 같음)

비 고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의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별표 2**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 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축총면적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담 당 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정여부	세부사항	
	계				
	승용차 부 제	<삭제>	<삭제>	<삭제>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1.~17. (개정안과 같음)

비 고

1. ~ 2. (개정안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축총면적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담 당 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정여부	세부사항	
	계				
	승용차 부 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	-----	-----

	요일제	<생략>		
	5부제	<생략>		
	2부제	<생략>		
종사자승용차이용제한		20	참여종사자수 : _____명	
주차수요리관	주유차료장화	<생략>	<생략>	
	주차장 축소	<생략>	<생략>	
	주차유도시스템	<생략>		
대중교통이용지	종사자	10	지급액 : 1명당 월 _____ 원 (중 _____ 원) 지급인원 : _____ 명, 지급방법 :	
	이용자	30	운영방법 :	
자전거이용활성화	자전거보관소 설치	20	구입항목 및 구입비용 : 구입시기 : 운영방법 :	
	자전거 이용	10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				
프로그램	최대경감 (%)	신청여부	세부사항	
승용차함께타기	5		참여대수 : _____ 대	

	요일제	<현행과 같음>		시행방법 :
	5부제	<현행과 같음>		
	2부제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주차수요리관	주유차료장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차장 축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차유도시스템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자전거 이용	20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				
프로그램	최대경감 (%)	신청여부	세부사항	
<삭제>	<삭제>		<삭제>	

	요일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5부제	<개정안과 같음>		
	2부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주차수요리관	주유차료장화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주차장 축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주차유도시스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자전거 이용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				
프로그램	최대경감 (%)	신청여부	세부사항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	-----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 축 총 면 적					m ²
	소 재 지				소유자(대표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업 무 담 당 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계									
	승 용 차 제	10부제	10							
		요일제	<생략>							
		5부제	<생략>							
		2부제	<생략>							
	중사자승용차이용제한		20							
	주 수 요 관 리	주차장유도화	<생략>							
		주차장소	<생략>							
		주차유도시스템	<생략>							
대중교통이용차량보조금	중사자	10								
	이용자	30								
자전거활성화	자전거소통	20								
	자전거이용	10								
승용차함께타기		5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 축 총 면 적					m ²
	소 재 지				소유자(대표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업 무 담 당 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계									
	승 용 차 제	<삭제>	<삭제>							
		요일제	<현행과같음>							
		5부제	<현행과같음>							
		2부제	<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주 수 요 관 리	주차장유도화	<현행과같음>							
		주차장소	<현행과같음>							
		주차유도시스템	<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자전거이용	20								
<삭제>		<삭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 축 총 면 적					m ²
	소 재 지				소유자(대표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업 무 담 당 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계									
	승 용 차 제	<개정안과같음>	<개정안과같음>							
		요일제	<개정안과같음>							
		5부제	<개정안과같음>							
		2부제	<개정안과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같음>							
	주 수 요 관 리	주차장유도화	<개정안과같음>							
		주차장소	<개정안과같음>							
		주차유도시스템	<개정안과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같음>								
	자전거이용	<개정안과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	------------	------------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시차출근제</td><td>15</td><td></td><td></td><td></td></tr> <tr><td>통근버스운영</td><td>20</td><td></td><td></td><td></td></tr> <tr><td>셔틀버스운영</td><td>10</td><td></td><td></td><td></td></tr> <tr><td>업무택시제</td><td><생략></td><td></td><td></td><td></td></tr> <tr><td>대중교통의 날</td><td>5</td><td></td><td></td><td></td></tr> <tr><td>배승시스템개선</td><td>10</td><td></td><td></td><td></td></tr> <tr><td>시설물주변교통환경개선</td><td>10</td><td></td><td></td><td></td></tr> <tr><td>기업체연함수요관리</td><td>5</td><td></td><td></td><td></td></tr> <tr><td>기타</td><td><생략></td><td></td><td></td><td></td></tr> </table>	시차출근제	15				통근버스운영	20				셔틀버스운영	10				업무택시제	<생략>				대중교통의 날	5				배승시스템개선	10				시설물주변교통환경개선	10				기업체연함수요관리	5				기타	<생략>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유연근무제</td><td>30</td><td></td><td></td><td></td></tr> <tr><td>통근버스운영</td><td>25</td><td></td><td></td><td></td></tr> <tr><td>셔틀버스운영</td><td>15</td><td></td><td></td><td></td></tr> <tr><td>업무택시제</td><td><현행과같음></td><td></td><td></td><td></td></tr> <tr><td><삭제></td><td><삭제></td><td></td><td></td><td></td></tr> <tr><td><삭제></td><td><삭제></td><td></td><td></td><td></td></tr> <tr><td><삭제></td><td><삭제></td><td></td><td></td><td></td></tr> <tr><td><삭제></td><td><삭제></td><td></td><td></td><td></td></tr> <tr><td>기타</td><td><현행과같음></td><td></td><td></td><td></td></tr> </table>	유연근무제	30				통근버스운영	25				셔틀버스운영	15				업무택시제	<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기타	<현행과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유연근무제</td><td>20</td><td></td><td></td><td></td></tr> <tr><td>통근버스운영</td><td><개정안과같음></td><td></td><td></td><td></td></tr> <tr><td>셔틀버스운영</td><td><개정안과같음></td><td></td><td></td><td></td></tr> <tr><td>업무택시제</td><td><개정안과같음></td><td></td><td></td><td></td></tr> <tr><td><개정안과 같음></td><td><개정안과같음></td><td></td><td></td><td></td></tr> <tr><td><개정안과 같음></td><td><개정안과같음></td><td></td><td></td><td></td></tr> <tr><td><개정안과 같음></td><td><개정안과같음></td><td></td><td></td><td></td></tr> <tr><td><개정안과 같음></td><td><개정안과같음></td><td></td><td></td><td></td></tr> <tr><td>기타</td><td>20</td><td></td><td></td><td></td></tr> </table>	유연근무제	20				통근버스운영	<개정안과같음>				셔틀버스운영	<개정안과같음>				업무택시제	<개정안과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같음>				기타	20																																	
시차출근제	15																																																																																																																																								
통근버스운영	20																																																																																																																																								
셔틀버스운영	10																																																																																																																																								
업무택시제	<생략>																																																																																																																																								
대중교통의 날	5																																																																																																																																								
배승시스템개선	10																																																																																																																																								
시설물주변교통환경개선	10																																																																																																																																								
기업체연함수요관리	5																																																																																																																																								
기타	<생략>																																																																																																																																								
유연근무제	30																																																																																																																																								
통근버스운영	25																																																																																																																																								
셔틀버스운영	15																																																																																																																																								
업무택시제	<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기타	<현행과같음>																																																																																																																																								
유연근무제	20																																																																																																																																								
통근버스운영	<개정안과같음>																																																																																																																																								
셔틀버스운영	<개정안과같음>																																																																																																																																								
업무택시제	<개정안과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같음>																																																																																																																																								
기타	20																																																																																																																																								

교통량감축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교통량감축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교통량감축세부이행실적	자체세부이행계획서별지작성첨부	교통량감축세부이행실적	자체세부이행계획서별지작성첨부

<p>「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성명 직위 (인)</p> <p>○○ 구청장 귀하</p>	<p>「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성명 직위 (인)</p> <p>○○ 구청장 귀하</p>	<p>「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성명 직위 (인)</p> <p>○○ 구청장 귀하</p>
---	---	---

[별지 제3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결정통보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유구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연락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업무담당자								
감축	프로그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계									

현행					개정안					수정안											
방안	승용차제	10부제	10																		
		요일제	<생략>																		
		5부제	<생략>																		
		2부제	<생략>																		
	중사용차량	승용차제한	20																		
	주요관리	주차장	주요화	<생략>																	
			주차장소	<생략>																	
			주차장자동화	<생략>																	
	대중교통이용	중사용차량	10																		
		이용자	30																		
	자전거이용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20																	
			자전거이용	10																	
	승용차함께타기		5																		
	시차출근제		15																		
	통근버스운영		20																		
	셔틀버스운영		10																		
	업무택시제		<생략>																		
	대중교통의날		5																		
	배출시스템개선		10																		
	시설물주변교통환경개선		10																		
기업체연합수요관리		5																			
기타		<생략>																			
장기간공공사업		<생략>																			
<p>「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p> <p>년 월 일</p> <p>○○ 구청장 (인)</p>					<p>「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p> <p>년 월 일</p> <p>○○ 구청장 (인)</p>					<p>「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p> <p>년 월 일</p> <p>○○ 구청장 (인)</p>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가목 중 “부설주차장으로 당해”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나목, 라목, 바목, 차목, 타목을 삭제하고, 다목, 아목, 자목, 카목을 각각 나목, 마목, 바목, 사목으로 하며,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자전거 이용 :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 라. 유연근무제 : 종사자의 30퍼센트 이상이 시차출근(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재택근무 등에 참여하여 통행발생을 분산, 또는 억제하려는 것.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유연근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3조제1항 중 “영”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 및 별표 2”를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 부제 운영이 다른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제8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를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자전거보관소 설치, 주차유도시스템 등”을 “ 주차유도시스템과 같이”로 한다.

제9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중 “10부제、요일제(5부제 포함)”를 “요일제、5부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가목을 삭제하며,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가. 승용차 요일제、5부제 :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제10조제5호 중 “10부제、5부제、요일제”를 “5부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 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12조에 따른 경감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

처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표 2로 하며, 별표 1 및 서식 1부터 서식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 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요일제	종사자 이용자 ○ 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 차량의 운행제한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5부제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2부제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홀수날 : 홀수차량 운행 / 짝수날 : 짝수차량 운행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의 70% 이상 주차요금을 징수 -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며, 무료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 경감산정 = 주차요금 수준 - 주차요금 수준 : 시설물주차요금 /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구분</td> <td>≥70%</td> <td>≥80%</td> <td>≥90%</td> <td>≥100%</td> </tr> <tr> <td>경감률</td> <td>5%</td> <td>10%</td> <td>15%</td> <td>20%</td> </tr> </table>	구분	≥70%	≥80%	≥90%	≥100%	경감률	5%	10%	15%	20%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구분	≥70%	≥80%	≥90%	≥100%								
	경감률	5%	10%	15%	20%								
주차장 축소	종사자 이용자 ○ 시설물 주차장 축소 (최소 10면 이상) ○ 경감산정 : 부담금 30% 범위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 주차면수 축소비율 = $\frac{\text{변경 전 주차면수} - \text{변경 후 주차면수}}{\text{변경 전 주차면수}}$ ※ 주차장 축소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 ○ 주차면수 "0" 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30% 경감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주차유도시스템	종사자 이용자 ○ 주차유도관리시스템, 주차자동안내시스템 등 설치, 운영 ※ 주차유도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설치비용 당해 연도만 경감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자전거이용	종사자 (100인 이상) ○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 이상 (종사원 100인 이하는 최소 5명 이상) 참여 ○ 경감산정 : 부담금 10% 범위내 소속종사자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 자전거 이용률 = $\frac{\text{자전거 이용 종사자수}}{\text{총 종사자수}}$ ※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유근무연제	종사자 (100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의 30%이상이 시차출근(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 단,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외 ○ 경감산정 : 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10 	○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통근버스영	종사자 (100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 경감산정 : (총 좌석수 ÷ 총 종사자수) × 2 × 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 	○ 부담금의 100분의 25 범위내												
셔틀버스영	종사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 제공 ○ 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10%) - 일평균 총 운행횟수 : 운영 노선수 ∑ (운행대수 × 운행횟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일평균 총운영횟수</td> <td>10회 이상</td> <td>20회 이상</td> <td>30회 이상</td> <td>40회 이상</td> <td>50회 이상</td> </tr> <tr> <td>경감률</td> <td>2%</td> <td>4%</td> <td>6%</td> <td>8%</td> <td>10%</td> </tr> </table>	일평균 총운영횟수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이상	경감률	2%	4%	6%	8%	10%	○ 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내
일평균 총운영횟수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이상										
경감률	2%	4%	6%	8%	10%										
업무택시제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부담금 30%범위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기타	종사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 축 총 면 적	m ²
	소 재 지			소유자(대표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담 당 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신청여부	세부사항
	계		100%		
	승용차제	요 일 제	20		시행방법 :
		5 부 제	20		
		2 부 제	30		
	주수관 차요리	주유차량화	20		주차요금 : 원/시간 (월 원) 징수시간 : 징수방법: 무료주차면수 :
		주차장축소	30		기존주차면수 : 축소예정주차면수:
		주차유도시스템	20		
자 전 거 이 용		20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 명	

[별지 제2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 축 총 면 적	m ²	
	소 재 지			소 유 자(대 표 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업 무 담 당 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계		100%			
	승용차제	요 일 제	20			
		5 부 제	20			
		2 부 제	30			
	주차수요리관	주차장유료화	20			
		주차장축소	30			
		주차유도시스템	20			
	자 전 거 이 용		20			
	유 연 근 무 제		20			
	통 근 버 스 운 영		25			
	셔 틀 버 스 운 영		15			
	업 무 택 시 제		30			
기 타		20				
교 통 량 감 축 이 행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교 통 량 감 축 세 부 이 행 실 적				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p>「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p> <p>○○ 구청장 귀하</p>						

[별지 제3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 축 총 면 적	m ²	
	소 재 지			소유자(대표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차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업 무 담 당 자				
감 축 방 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100%			
	승 용 차 제	요 일 제	20			
		5 부 제	20			
		2 부 제	30			
	주 차 수 요 리	주차장유료화	20			
		주 차 장 축 소	30			
		주차유도시스템	20			
	자 전 거 이 용		20			
	유 연 근 무 제		20			
	통 근 버 스 운 영		25			
	셔 틀 버 스 운 영		15			
	업 무 택 시 제		30			
기 타		20				
장 기 간 공 공 사 업		50				
<p>「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구청장 (인)</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감축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p> <p>가. 승용차 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u>부설주차장으로 당해</u> 승용차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p> <p>나. <u>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u> : <u>종사자 승용차의 시설물 대지 및 부설주차장 운영을 제한하는 것</u></p> <p>다. 주차수요관리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 주차면수 축소, 주차유도시스템 도입 등으로 주차수요 발생을 억제하여 주차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p> <p>라. <u>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u> : <u>종사자와 이용자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 충전 또는 지하철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것</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뜻</u>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p> <p>가. ----- : ----- ----- ----- <u>부설주</u> <u>차장을 이용하는</u> ----- -----</p> <p>나. ----- ----- ----- ----- ----- ----- -----</p> <p>라. ----- -----</p>

현행	개정안
<p>마. <u>자전거 이용 활성화</u> :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p>	<p>다. <u>자전거 이용</u> : ----- ----- ----- -----</p>
<p>바. <u>승용차함께타기</u> :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p>	<p>〈삭제〉</p>
<p>사. <u>시차출근제</u>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함.</p>	<p>라. <u>유연근무제</u> : 종사자의 30퍼센트 이상이 시차출근(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재택근무 등에 참여하여 통행발생을 분산, 또는 억제하려는 것. 다만,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것은 유연근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p>
<p>아. <u>통근버스 운영</u> :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p>	<p>마. ----- ----- -----</p>
<p>자. <u>셔틀버스 운영</u> : 시설물을 이용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게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른 차량을</p>	<p>바. ----- ----- -----</p>

현 행	개 정 안
<p>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p> <p><u>차. 연합교통수요관리 :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고자 승용차함께타기, 통근버스 공동운영 등을 실시하는 것</u></p> <p><u>카. 업무택시제 : 기업에서 업무출장시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은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u></p> <p><u>타. 대중교통의 날 운영 : 기업체에서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고 출·퇴근시 종사자가 참여하는 것</u></p>	<p>-----</p> <p><u>사. -----</u></p> <p>-----</p> <p>-----</p> <p>-----</p>
<p>제3조(부담금의 면제) ①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한다.</p> <p>1. ~ 4. (생략)</p> <p>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시설로서 제12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이하 "경감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면제여부를 결정한다.</p> <p>1. ~ 2. (생략)</p>	<p>제3조(부담금의 면제)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승용차부제 운영이 다른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각각 50퍼센트 적용하여 합산한다.</p>	
2. 종사자 승용차 부제 운영과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삭제>
3.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과 종사자 대중교통의 날 운영	<삭제>
4.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과 종사자 승용차함께타기	<삭제>
5. 통근버스 운영과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 중 통근버스 공동운영	<삭제>
6. 승용차함께타기와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 중 승용차함께타기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생략)	제8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때에는 8월 1일 이후에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 -----.
③ 교통량감축기간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다만, <u>자전거보관소 설치, 주차유도시스템 등 1회성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해서는</u>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u>주차유도시스템과 같이</u> ----- -----.

현행	개정안
<p>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p> <p>1. 승용차 10부제·요일제(5부제 포함) 및 2부제</p> <p>가. 승용차10부제 : 주차면수의 2퍼센트 이내</p> <p>나. 승용차 요일제 :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p> <p>다. 승용차2부제 :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p> <p>2. 승용차함께타기 : 승용차함께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p> <p>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영을 아니한 경우</p> <p>4.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p>	<p>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p> <p>-----</p> <p>-----</p> <p>-----</p> <p>-----</p> <p>-----</p> <p>1. 승용차 요일제·5부제 및 2부제</p> <p>가. 승용차 요일제·5부제 :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p> <p>나. 승용차2부제 :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p> <p>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영을 아니한 경우</p> <p>3.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p>
<p>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4. (생략)</p> <p>5. 31일과 오후10시부터 익일 오</p>	<p>제10조(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p>

현 행	개 정 안
-----	-------

전7시 사이의 10부제·5부제·요일제 및 2부제
6. ~ 7. (생략)

----- 5부제 -----

6. ~ 7. (현행과 같음)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 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12조에 따른 경감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후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 경감비율									
승용차부제	10부제	종사자 이용자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 인정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요일제	(생략) ○(생략)	○(생략)									
	5부제	(생략) ○(생략)	○(생략)									
	2부제	(생략) ○(생략)	○(생략)									
종사자 이용제한	종사자 (100인 이상)	○출퇴근시 등에 소속 종사자(차량소지자)에 대한 자가용 이용을 강제로 제한(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등)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종사자비율</td> <td>≥80%</td> <td>≥90%</td> </tr> <tr> <td>업무시설 등 (별표3 구분 5,11,12,14,15)</td> <td>10%</td> <td>20%</td> </tr> <tr> <td>판매시설 등 (별표3 구분 ~4,6~10,13,17)</td> <td>5%</td> <td>10%</td> </tr> </table> - 종사자비율 = $\frac{\text{이용제한 참여종사자}}{\text{총종사원수(차량소지자)}}$	종사자비율	≥80%	≥90%	업무시설 등 (별표3 구분 5,11,12,14,15)	10%	20%	판매시설 등 (별표3 구분 ~4,6~10,13,17)	5%	10%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종사자비율	≥80%	≥90%										
업무시설 등 (별표3 구분 5,11,12,14,15)	10%	20%										
판매시설 등 (별표3 구분 ~4,6~10,13,17)	5%	10%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생략) ○(생략)	○(생략)									
	주차장 소	(생략) ○(생략)	○(생략)									
	주요차도 시스템	(생략) ○(생략)	○(생략)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 경감비율
승용차부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요일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부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부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차장 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요차도 시스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중사자 (100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사자 80%이상에게 매월 월40회이상 탑승가능 비용을 교통카드 또는 지하철 승차권 등으로 제공(현금지급 제외) 중사자지급율 = 보조금 지급중사자 / 총중사자 경감산정 : 실제 지급금액 전액(부담금의 10%범위내, 월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 이용자에게 교통카드 충전, 지하철 승차권 등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현금지급 제외) 경감산정 : 실제 지급금액 전액(부담금의 30%범위내, 월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30범위내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자전거이용활화	자전거보관소설치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시설물내 자전거 보관소, 도난방지시설, 수리공구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보관소 최소 10대이상 설치) 자전거 구입 : 중사원 5%이상(중사원 100인이하 최소 5명) 참여 및 구입대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확보(대당 5만원 경감) 경감산정 : 설치비용 전액(부담금 20% 범위내) ※자전거구입비용, 자전거보관소 설치비용 등은 해당 연도만 경감 <자전거 보관소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물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후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경감산정 : 운영비용 전액(부담금 10% 범위내, 설치비 지급 연도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자전거이용	(생략)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자전거이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승용차합께타기	중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퇴근시 중사자의 승용차에 2명이상 승차하여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최하 20대 이상) 참여차량표지, 참여자 등 관련계획 비치, 주차장 구분운영 경감산정 : 참여차량 수 20대이상 - 20대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1 - 20대초과시마다 100분의1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내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시차출근제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중사자의 50%이상 출근시간 조정(중사자 100인이상) ※(생략) 경감산정 : 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5 (3시간 이내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15범위내 	유연근무제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사자의 30%이상 시차출근(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참여, 스마트센타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현행과 같음) 경감산정 : 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 																								
통근버스영	(생략)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 	통근버스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25범위내 																								
셔틀버스영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5%) 일평균 중운행횟수 = $\frac{\sum[\text{노선1}(\text{대수} \times \text{회수}) + \text{노선2}(\text{대수} \times \text{회수})]}{\text{회수}}$ <table border="1"> <tr> <td>일평균 중운행 횟수</td> <td>≥20회</td> <td>≥40회</td> <td>≥60회</td> <td>≥80회</td> <td>≥100회</td> </tr> <tr> <td>경감률</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able>	일평균 중운행 횟수	≥20회	≥40회	≥60회	≥80회	≥100회	경감률	1%	2%	3%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내 	셔틀버스영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10%) - (현행과 같음) <table border="1"> <tr> <td>일평균 중운행 횟수</td> <td>≥10회</td> <td>≥20회</td> <td>≥30회</td> <td>≥40회</td> <td>≥50회</td> </tr> <tr> <td>경감률</td> <td>2%</td> <td>4%</td> <td>6%</td> <td>8%</td> <td>10%</td> </tr> </table>	일평균 중운행 횟수	≥10회	≥20회	≥30회	≥40회	≥50회	경감률	2%	4%	6%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15범위내
일평균 중운행 횟수	≥20회	≥40회	≥60회	≥80회	≥100회																									
경감률	1%	2%	3%	4%	5%																									
일평균 중운행 횟수	≥10회	≥20회	≥30회	≥40회	≥50회																									
경감률	2%	4%	6%	8%	10%																									
업무택시제	(생략)	○(생략)	○(생략)	업무택시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중교통의날	중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체에서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고 출퇴근시 소속중사자 90% 이상 참여하는 경우 <table border="1"> <tr> <td>대중교통의날</td> <td>1회</td> <td>2~3회</td> <td>4회이상</td> </tr> <tr> <td>경감률</td> <td>2%</td> <td>3%</td> <td>5%</td> </tr> </table>	대중교통의날	1회	2~3회	4회이상	경감률	2%	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5 범위내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대중교통의날	1회	2~3회	4회이상																											
경감률	2%	3%	5%																											
배송시스템개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이 승용차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배송에 어려움이 없는 배송시스템 구축 ※ 개선활동 해당 연도에 한하여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내 경감심의 위원회 상을 거쳐 결정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시설물주변교통환경개선	이용자중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 주변 및 내부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혼잡 완화 시설물 주변 주정차 차량(택시, 버스 등)을 위한 대기공간 확보 등 ※ 개선활동 해당 연도에 한하여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내 경감심의 위원회 상을 거쳐 결정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	-----

기타	(생략)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30범위내 - 경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기타	(현행에 과감)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함께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 시스템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개선 등)	○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내 - 경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	---	----	----------	--	---

[별표 2]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
(제6조제2항 관련)**

□ 승용차 함께 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해당 기업체	참여한 기업체
○ 해당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60인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5%	○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인 이상 7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70인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5%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 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 시 : 5%	○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 시 : 5%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1.~17. (생략)

비 고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의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별표 3**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 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축총면적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담 당 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시정여부	세부사항		
	계					
	승용차제	10부제	10		시행방법 :	
		요일제	<생략>			
		5부제	<생략>			
	2부제	<생략>				
	중사자승용차이용제한		20	참여중사자수 : 명		
	주차수요리	주 차 장 유 료 장 화	<생략>	<생략>		
		주차장 축소	<생략>	<생략>		
		주 차 유 도 템	<생략>			
대중교통차량급	종 사 자	10	지 급 액 : 1명당 월 원 (중 명 원)			
	이 용 자	30	지급인원 : 명 지급방법 :			
자전거이용	자전거보관소 설 치 등	20	구입항목 및 구입비용 :			
	자전거 이용	10	구입시기 : 운영방법 :			

[별표 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1.~17. (현행과 같음)

비 고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의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별표 2**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 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축총면적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담 당 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시정여부	세부사항		
	계					
	승용차제	<삭제>	<삭제>	<삭제>		
		요일제	<현행과 같음>	시행방법 :		
		5부제	<현행과 같음>			
	2부제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주차수요리	주 차 장 유 료 장 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차장 축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 차 유 도 템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자전거 이용	2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계획서			
프로그램	최대경감 (%)	신청여부	세부사항	프로그램	최대경감 (%)	신청여부	세부사항
승용차함께타기	5		참여대수 : _____ 대	<삭제>	<삭제>		<삭제>
시차출근제	15		<생략>	유연근무제	20		<현행과 같음>
통근버스 운영	20		<생략>	통근버스 운영	25		<현행과 같음>
셔틀버스 운영	10		<생략>	셔틀버스 운영	15		<현행과 같음>
업무택시제	<생략>		<생략>	업무택시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중교통의 날	5		월 회 (시행(요)일 : _____)	<삭제>	<삭제>		<삭제>
배송시스템개선	10		운영방법 :	<삭제>	<삭제>		<삭제>
시설물주변 교통환경개선	10		개선내용 :	<삭제>	<삭제>		<삭제>
기업체연합수요관리	5		운영방법 :	<삭제>	<삭제>		<삭제>
기타	30			기타	20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월간)
교통량감축 세부 이행계획			자체 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교통량감축 세부 이행계획			자체 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 축 총 면 적	㎡			
	소 재 지				소 유 자(대표자)				
	주 차 면 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 주 업 체 수					
	핸드폰			업 무 담 당 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이행계획서 신청내용	경감신청	비고				
	계								
	승 용 차 제	10부제	10						
		요일제	<생략>						
		5부제	<생략>						
		2부제	<생략>						
	중사자승용차이용제한		20						
	주 차 수 요 관 리	주 차 장 유 료 화	<생략>						
		주 차 장 축 소	<생략>						
		주차유도시스템	<생략>						
	대 중 교 통 이 용 자 보 조 금	중 사 자	10						
		이 용 자	30						
	자 전 거 용 활 성 화	자 전 거 동 보 관 소 설 치 등	20						
		자 전 거 용 이	10						
	승 용 차 함 께 타 기		5						
	시 차 출 근 제		15						
	통 근 버 스 운 영		20						
	셔 틀 버 스 운 영		10						
	업 무 택 시 제		<생략>						
	대 중 교 통 의 날		5						
배 송 시 스템 개 선		10							
시 설 물 주 변 교 통 환 경 개 선		10							
기 업 체 연 합 수 요 관 리		5							
기 타		30							
교 통 량 감 축 이 행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교 통 량 감 축 세 부 이 행 실 적			자체 세부이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p>「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성명 직위 (인)</p> <p>○○ 구청장 귀하</p>									
<p>「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소속 성명 직위 (인)</p> <p>○○ 구청장 귀하</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시설개요	시 설 명			건축총면적			m ²	
	소 재 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업무담당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승용차부제	10부제	10					
		요일제	<생략>					
		5부제	<생략>					
		2부제	<생략>					
	종 사 자 수	승 용 차 한	20					
	주요차수관리	주유차량화	<생략>					
		주차장소	<생략>					
		주차장자동화	<생략>					
	대중교통이용차감	중사자	10					
		이용자	30					
	자전거이용활성화	자전거보관소설치	20					
		자전거이용	10					
	승용차함께타기		5					
	시차출근제		15					
	통근버스운영		20					
	셔틀버스운영		10					
	업무택시제	<생략>						
	대중교통의날		5					
배송시스템개선		10						
시설물주변교통환경개선		10						
기업체연합수요관리		5						
기 타		30						
장기간공공사업	<생략>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

시설개요	시 설 명			건축총면적			m ²	
	소 재 지			소유자(대표자)				
	주차면수	총 대		소 유 구 분	민간/국가/공사/지자체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 사 자 수				
연 락 처	사무실	FAX	입주업체수					
	핸드폰			업무담당자				
감축방안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승용차부제	<삭제>	<삭제>					
		요일제	<현행과 같음>					
		5부제	<현행과 같음>					
		2부제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주요차수관리	주차장유료화	<현행과 같음>					
		주차장소	<현행과 같음>					
		주차장자동화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자전거이용	20						
	<삭제>	<삭제>						
	유연근무제	20						
	통근버스운영	25						
	셔틀버스운영	15						
	업무택시제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기 타	20							
장기간공공사업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구청장 (인)